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2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한정애·장철민·서영교

김준형 • 이학영 • 송옥주

민홍철 • 이병진 • 김현정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4조).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25명"을 "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각 목 외의 부분 중 "8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4항제4호가목"을 "제4항제4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 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 또는 위원장이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10명"을 각각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명"을 "6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할 경우 보험재정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25명</u>	<u>27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	③
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	<u>호선한다</u> .
<u>다</u>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4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u>8명</u>	4 <u>10명</u>
<u><신 설></u>	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u>가.</u> ~ <u>다.</u> (생 략)	<u>나.</u> ~ <u>라.</u> (현행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음)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	⑤ <u>제4항제4</u>
<u>호가목</u> 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	호나목

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 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⑥·⑦ (생략)

등)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 1. ------10명

	 	 	 	_	
				•	
	 	 	 		_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 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 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할 경우 건 강보험정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 또는 위원장이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 을 공개하여야 한다.

 $\underline{7} \cdot \underline{8}$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12명

-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10명
-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u>10명</u>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 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 는 각 <u>5명</u>
- 2. (생략)
-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생 략) <u><신 설></u>

2
- <u>12명</u>
3 <u>12명</u>
②
1
<u>6명</u>
2. (현행과 같음)
3
<u>사람(국회 소관</u>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교
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
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정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
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
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할 경우 보
험재정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재정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

 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해

 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

 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